

# 과 속 사 고

이 홍 로  
 <교통안전공단 교수>

## 1. 머리말

대부분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불이행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복잡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교통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인사 사고시 형사처벌하는 10개 특례 중대법규 항목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과속이란 법정최고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정최고 속도를 20km/h를 초과한 경우이다. 여기서 20km/h에서 단 0.1km라도 초과한 경우이다.

## 2. 과속의 종류

### 가. 도로별 자동차 등의 속도

<표 1> 과속사고의 종류

구 분 \ 내 용	도로별	최저속도	최고속도
일반도로	4차선 미만		60km/h 이내
	4차선 이상		7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3차선 미만	30km/h	70km/h
	편도 3차선 이상	40km/h	80km/h
고속도로	4차선	50km/h	• 100km/h 다만, 보통소형승합(고속용 제외), 보통소형화물, 소형3륜화물, 견인, 특수차는 80km/h • 단, 중부고속도로는 최고속도 110km/h, 최저속도 60km/h
	2차선	20km/h	80km/h

### 나.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1) 총중량 2,000kg에 미달하는 차는 견인하는 때는 매시 30km/h

(2)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는 매시 25km/h 이내일 것

### 다. 우천시의 과속사고

(1) 우천시에는 법정 제한 속도보다 20%~50%까지 감속

(2) 비(일기)의 내용에 따른 적용(<표 2> 참조)

(3) 우천에 대한 증거자료 명

시

- 현장사진, 일기예보 신문
- 기상청 조회 사고 시간대 일기예보, 일기상 통계표(기상청 발행) 등

### 라. 결빙 폭설시 과속사고

(1) 결빙 폭설시 속도 규정

(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상기후시 자동차 등의 속도)

(나) 결빙 폭설의 내용

① 노면이 얼어붙은 때

②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표 2> 비의 내용별 감속

보슬비, 가랑비, 눈, 안개	소나기, 폭우, 폭설, 심한 안개
1/5 감속	1/2 감속

③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때

(2) 결빙 폭설시 제한속도 법  
정 최고속도 1/2감축운행

**마.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된  
곳에서의 과속사고**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속도제한 표지 설치

**3. 과속의 속도 추정 방법**

**가. Skid-mark(노면흔적)에**

**의한 속도추정**

**나. 사고차량의 파손 흔적에**

**의한 속도추정**

**다. 타코그래프(속도 기록계)  
에 의한 속도추정**

사업용차량, 고압가스 탱크로  
리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쓰레기 운반자동차,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부착의무화

**라. 사고차량의 속도계기판 활**

**용 방법**

① 사고충격시 속도계기판 정  
지상태

② 정지된 속도표시 사고당시  
속력으로 활용

**마. 속도감시 카메라 촬영 사  
진자료**

**바. 속도측정기에 의한 속도  
산출**

**사. 운전자의 진술과 자백**

〈표 3〉 과속사고(20km초과)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1. 장소적 요건	• 도로나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에서의 사고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
2. 피해자의 요건	• 고속차량(20km/h)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속력 20km/h이하 과속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속력 20km/h초과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3. 운전자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속력 20km/h 초과하여 과속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li> <li>1)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제한속력 20km/h초과한 경우</li> <li>2) 일반도로 제한속력 60km/h, 4차선 이상 도로 70km/h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li> <li>3)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구간에서 제한속력 20km/h 초과한 경우</li> <li>4)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때 최고속도 2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li> <li>5)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결빙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최고속도 5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li> <li>6) 총중량 21,000kg에 미달 자동차를 3배 이상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 매시 30km/h에서 20km/h 초과한 경우</li> <li>7)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 매시 25km/h 초과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속력 20km/h 이하로 과속하여 운행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li> <li>• 제한속력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li> </ul>
4. 시설물 설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5조 제2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 표지중</li> <li>규제표지 일련번호 220호(최고속도 제한표지)</li> <li>노면표지 일련번호 612호(속도제한 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안전표지</li> <li>규제표지 223호(서행표지)</li> <li>보조표지 507호(안전속도 표지)</li> <li>노면표지 631호(서행표지)의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과속(20km/h 초과)이 적용 안됨.</li> </ul>



#### 4. 과속관련 판례

가. 위험한 곡로를 제한속도 초과하여 도로 중앙선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반대 방향차와 충돌하고 추락전복된 경우에는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로 본다.

나.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본다.

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과속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무면허 운전의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중대하다.

라.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 커브길에서 감속, 서행치 않고 지정속도대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했다면 과속이 인정된다.

마.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읍·면·집단부락 등에 제한속도를 30km/h로 고시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제한속도를 20km/h초과 운행 중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해석은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속도제한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에 의한 과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자동차 전용도로라 할지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사. 야간 고속도로에서 가시거리 60m인데 시속 100km/h속력으로 진행하다가 60m 전방에 피해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돌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과속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㉞